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의 견 서

(서상열 의원 발의)

☐ 기후환경본부장 권 민입니다.

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

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안건번호 제2774호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☐ 동 일부조례개정안은

동일 영향권역 내 기존 사업과

신규 사업 간의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,

평가대상 규모 산정 시

두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

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 
공감합니다.

☐ 다만 동 조례의 상위법인  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3에서  
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사이 평가 제외기간을 두지 않아  
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

☐ 기존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 
15년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고  
동일 영향권 내 신규 사업 추진 시 누적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☐ 또한, 그간 양 사업 간 간격이 1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 
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 
개정의 실익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 
필요합니다.

☐ 따라서,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류 요청드립니다.

☐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